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10/ 15 통권 1749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 기업경영과 세무

####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이사총실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실무대책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3.1%의 이자율을 적용함
- 기업경영과 세무
-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 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회사가 지급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직원 온라인몰에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p.11)

###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 <4대보험 직장가입자 운영·관리 실무 핵심 요약>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목적	노령 은퇴 후 본인 기본연금	본인과 피부양자 질병치료와 건강 증진	실업급여지급과 구직·고용촉진 지원	업무상 재해의 손해보상
부담율 (근로자)	모든 근로소득의 9%(반)	근로소득의 약 8%(반)	급여의 2~2.5%(반)	업종별 차이 0.66~3%(사업주)
적용대상	근로소득자 (60세 미만) (3개월 이상 계속 희망)	근로소득자 (좌동)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자 · 현장실습생
피부양자	본인 노후자금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본인 실업급여	본인재해보상
적용제외	사업소득자	사업소득자	· 1차산업 비법인 4인이 하 ·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 자가소비 생활활동 · 65세 이후 고용자	· 1차산업비법인 5인 미만 · 타법재해보상 · 가구내고용 등 · 노조전임자
일용근로자	1개월 일용근로자 (60시간 미만 근무)		· 근로자 고용일 14일내 · 공사착공일부터 14일내	
적용일자	신규고용일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사회보험 통합정수 (좌동)	· 근로자 고용일 14일내 · 공사착공일부터 14일내	
대표이사 등	무보수는 적용 제외 (주총결의서)	대표자 1인만 적용가능 (보수없으면 상실)	등기임원 등은 제외 가능 (별도신청)	좌동(고용산재 적용혜택 적은 경우 신청)
통합과 분리	본점·지점·대리점 등 경영일체시 통합적용 ↔ 다수분리시 구분적용			
EDI처리	회사 인증서로 신고서 작성, 증명신청, 문서 송수신 등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중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 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9호 / 주간 42호

2025. 10. 15. (수)

·발행인: 이윤선  
·제작: (주)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4대보험 직장가입자 운영·관리 실무요약	표지
CEO의 경영산책	이사출실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실무대책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전전세 임대시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여부 - 급여공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무상대여 관련 질의 -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4 5
눈에 맞는 절세미인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3.1%의 이자율을 적용함	6
매일 절세재무요점	- 일반 배당과 감액배당 비교 - R&D 조세지출 제도 현황	8 9
직장인 Survival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습관	10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규소득-3287, 2025.04.24) -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16, 2025.04.29)	11 12
세정뉴스와 해설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744억원... 환급 이자만 17억원	14
마케팅 Tax consulting	회사가 지급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직영 온라인몰에서 결제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12
세무정보	- 기업경영상세무 - 국제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 이 편해집니다 - 국제, 휴택스 이외에도 은행·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제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14 41 43 44 46

# 이사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기업의 실무대책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 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사의 법적 책임 소송 위험 증가: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로 확대되면서, 경영진이 소액주주 등 개별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비춰질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변질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 경영 판단 부담증가: 이사의 결정이 주주 이익에 반한다고 해석되면 업무상 배임 혹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이 혁신적이거나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의 또는 중과실뿐 아니라, 경영상 판단의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 적대적 M&A· 경영권 위협 증대: 외국 투기자본 및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권리 강화 조항을 활용해 경영권에 개입하거나, 소송 등으로 이사진을 압박할 위험이 확대되었다. 지배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그룹 등은 경영권 방어력이 약화될 수 있다. 외국 투기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소송 리스크를 활용해 경영진 교체, 경영권 흔들기 등 공격 수단으로 악용 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 사외이사(독립이사) 및 감사위원회 규정 변화: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대주주 의결권이 제한(감사위원 선임 3%를 등)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전략이 어려워지고, 이사회를 통한 내부 통제 및 의사결정의 복잡도가 높아졌다.
- 경영 투명성과 준법 입증 부담 증가: 이사회, 주주총회 과정의 기록, 경영판단의 법적 정당성 입증 요구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문서화 취약이나 내규 미비 시 각종 분쟁· 규제 리스크가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사회 의사결정 등에 대한 체계적 기록과 투명성, 공정성 입증을 위한 관리체계의 정립이 요청된다.

### ●기업의 실무대책: 예시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이 마련해야 할 실무적 대책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영진과 관리자 대상 교육 강화: 경영진과 관리자에게 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회사 및 전체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여, 의무의 실제 범위와 구체적 책임 위반 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시켜야 한다. 주요 의사결정 전에 이해상충, 소수주주 보호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외부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내부통제 시스템 및 매뉴얼: 이사회 운영 규정, 윤리강령, 이해상충 정책 등 관련 내규를 상법 개정 사항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정 보완하고,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사회 등의 안건 심의 시 의사록 작성 보존 절차를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객관적 근거와 논의 내용이 명확히 문서화한다.
3.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체계 확립: 주요 안건(예: 투자, 합병) 의사결정시 이사 개개인의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회의 배제 또는 철저한 공개절차를 수립 운영한다. 사외/독립이사 및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모든 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거버넌스를 개선한다.
4.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및 윤리 교육 확대: 임직원 대상 충실의무, 준법경영, 내부고발 등과 연계한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기업 전반에 절차 준수와 투명성 문화를 정착 확산한다.
5. 법무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법무팀의 경영참여도를 높이고, 정기적인 리스크 진단과 교육 컨설팅을 강화하여 잠재적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중요 의사결정 시 반드시 사전에 법률 검토를 실시한다. 기업의 규모상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 등의 경우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법적 리스크를 비롯한 경영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6. 주주 및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강화: 소수주주 포함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공개, 소통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신뢰를 높이고,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확대되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른 법적 함정과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상기와 같은 사항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 전전세 임대시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으로 신고여부

**Q** A임대인으로 부터 임차한 상가내에 B법인에게 1평정도를 3개월 단위로 단기 임대를 주고 소액월세(약 월 2십만원)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1. 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2. 임대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에 넣어 신고하면 되는지요?

**A** 1. 일회성 임대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사업자등록하여야 합니다.  
2. 임대사업등록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시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급여공제 회계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Q** 기관의 A직원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이번 달 급여 중 1/2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기 위해 급여에서 공제 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럴 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요? (당사자에게 급여공제 동의서 받음)

그리고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서 차감해주어야하는지요? 차감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예시) 세전 급여 800, 각종 공제금 100, 실지급 700

- 1) 인건비 8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일시예치금 400(부당이득 반환 공제분) : 결산 시 잡수입 처리
- 2) 인건비 400 / 각종 공제예수금 100  
/ 현금 300

: 인건비 자체를 1/2 감액하는 방법

**A** 급여를 반환받는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는데, 원래 급여가 아닌데 과도하게 지급되어 반환받는 것이라면 인건비자체를 감액하여 처리하는 2안이 타당한 처리방법입니다.

## 무상대여 관련 질의

- Q** 당사는 현재 신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GAAP 사용)
- 당사가 서버를 구입하여 여기에 당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고객사에 제공하고, 약 6개월간의 무상대여 실시
  - 이후 고객사가 최종사용하겠다는 의사결정시, 해당서버의 Ownership을 완전히 넘기는 구조
- 이 경우, 서버를 구매했을시와 매출확정이 되었을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 1) 서버구입시
    - 비품 / 보통예금
    - 감가상각비/감가상각누계액
  - 2) 매출시
    - 보통예금/매출
    - 감가상각누계액/비품
    - 감가상각비-/
    - 매출원가
- 위와 같이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A** 귀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서버는 비품보다는 상품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부가세 초과 입금 회계처리 문의

- Q** 업체에 운송비를 대납하고, 후에 청구하여 받기로 했는데, 업체에서 운송비 대납금 처리를 제품 발주처리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운송비 + 부가세10% 를 초과하여 입금받게 되는데 초과되는 부가세 10% 금액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잡이익 처리해도 될까요?

- A** 운송비대납시 귀사가 부가가치세액을 대납하지 않는데, 회수시 부가가치세액만큼을 받는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잡수입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 연 3.1%의 이자율을 적용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다가 현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2025년에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반영되어 3.1%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3.1%의 이자율을 반영하여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무처리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이유

부동산(주택은 제외) 등을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도 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매출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매월의 임대료 외에 전세금·보증금 등은 원칙적으로 매출이 아니라 계약 종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할 부채이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지만, 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면 월임대료를 받는 경우와 보증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형평이 침해되기 때문에 보증금 등의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간주임대료의 세무처리 방법

부동산(주택은 제외)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데, 임대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2025년은 3.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산식

$$= \text{임대보증금} \times \text{과세대상 기간일수} \times \frac{\text{정기예금이자율}}{365}$$

하지만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동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연체중인 경우) 약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한 경우에는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 부가46015-905, 1998.05.0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또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으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불문하고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 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text{공급가액} = \frac{\text{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times \text{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times \text{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 이자율(해당 예정 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365(\text{윤년의 경우에는 } 366)}$$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사무실을 보증금 3억원과 월세 3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 ① 월임대료: 3백만원 × 3개월 = 9,000,000원
-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2025.7.1~2025.9.30)  
= 3억원 × 3.1% × (92일/365일) = 2,344,109
- 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 월임대료(①) + 간주임대료(②)  
= 9,000,000 + 2,344,109 = 11,344,109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 월

#### 일반 배당과 감액배당 비교

	일반배당	감액배당
배당재원	• 순이익(이익잉여금)	• 자본준비금 감액분
배당원천	• 영업 통해 벌어들인 이익	• 과거 주주들의 자본거래에 따른 자금
과세	• 배당소득세 15.4% • 금융소득종합과세 최대 49.5%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세 면제 • 대주주에 한해 주식 취득가보다 감액배당이 많으면 초과액 배당소득세 부과(내년 시행)

### 화

#### 가상자산 과세안

구분	현행(과세 유예)	변경 후(과세 시행)
과세 여부	비과세	과세
소득 구분	해당 없음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0%	22%(지방소득세 포함)
기본 공제	해당 없음	연 250만원
손실 이월공제	해당 없음	미적용



## R&D 조세지출 제도 현황

(단위 : 억원)

조세지출 제도명	규모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6,302
통합투자세액공제	7,470
벤처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1,905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805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652
벤처투자회사 주식양차익 비과세	20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114
국내 복귀 우수인력 소득세 감면	15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	15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8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과세특례	6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4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과세특례	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1

조세지출 제도명	규모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 세액공제	76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7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67
외투기업 자본재도입 관세면제	52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43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40
창업기업 출자 과세특례	23
소부장기업 출자·인수 과세특례	0
소부장기업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0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0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 물품 관세면제	0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추정곤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추정곤란



## 종합부동산세 연령·보유기간 세액공제(최대 80%적용)

연령	공제율
60세 이상~65세 미만	20%
65세 이상~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6가지 습관

- 하루의 시작과 끝에 짧은 루틴을 두십시오

아침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심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과 생활의 경계가 분명해질수록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 업무 중 작은 휴식을 의도적으로 가지십시오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집중력 저하와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50분 집중 후 5~10분의 휴식을 갖는 '포모도로 기법'을 활용하면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생산성도 유지됩니다.

- 업무와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실수나 지적을 곧바로 '나라는 사람'의 가치와 연결하지 마시고, '이번 업무의 결과'로 구분해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 업무 외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찾으십시오

취미, 운동, 독서, 음악 감상 등 일과 무관한 활동이 스트레스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업무에서 받는 긴장을 다른 즐거움으로 해소하는 것이 장기적인 회복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 동료와 소통하며 정서적 지지를 받으십시오

혼자 고민을 짊어지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동료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작은 공감과 격려가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직장 내 긍정적인 관계는 곧 마음의 안전망이 됩니다.

- 스스로를 칭찬하고 성취를 기록하십시오

작은 성과라도 기록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면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커집니다. "오늘은 이만큼 해냈다"는 인식은 자기 회복력을 키우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회사가 지급한 온라인 전용 포인트로  
직영 온라인몰에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임직원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가 부여한 온라인 전용 포  
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법규소득-3287, 2025.04.24

### 질 의

• A법인에서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A법인이 운  
영하는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일괄로 지급

\* 인당 1백만 포인트(1포인트 = 1원의 가치)를 지  
급,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말일이며, 미사용 포  
인트는 전액 소멸됨

- A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포인트를 인정상  
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에 반  
영

### 질의

•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온라인 전용 포  
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 회 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  
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  
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  
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  
104조의19 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435, 2025.02.20

### 질 의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주택건설사업자들과 주택법상 공동사업주  
체에 해당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토지를 수용 재결 등을 거  
쳐 취득

- 2021.12.30. A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음

### 질의

• 「주택법」제5조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주체에 해당하  
는 토지소유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1  
항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여 「조세특  
례제한법」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  
니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서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사전법규부가-216, 2025.04.29

#### ■ 질 의

-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 회 신

신탁회사(이하 "수탁자")가 2022.1.1.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하는 사업자(이하 "위탁자")와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가 신탁재산 미분양으로 대출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당초 위탁자의 지위가 새로운 위탁자(시공사)로 이전된 경우로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새로운 위탁자(시공사)가 되는 것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서면법규소득-2413, 2025.04.02

#### ■ 질 의

- 질의법인은 '00.0.0. 질의법인을 존속법인으로 AA 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됨  
- 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주는 CCC, 그의 특수관계인 10인 및 자기주식임

#### 질의

-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 금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 ■ 회 신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최근 5년간 과오납된 지방세 744억원... 환급 이자만 17억원

지난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걷거나, 받아야 할 액수보다 많이 걷어 돌려준 세금이 7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액은 184억5천619만원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외의 과오납 환급액 113억1천922억원으로 전체의 약 61.3%를 차지했다. 환급 이자(3억6천430만원) 비중도 약 61%였다.

과오납은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세금이 부과된 오납과, 정상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한 과납을 합친 개념으로 행정 절차상 오류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 의원은 "세무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며 "과오납의 반복, 환급 이자까지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원가 핑계로 폭리 취한 외식·식품업체 55곳... 국세청 세무조사 철폐 '필요시 고발'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원가 인상을 핑계로 원가를 부풀리거나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생활물가 밀접업종 55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17개 등 총 55개 업체다.

장바구니 및 외식물가는 해를 거듭하며 급등하고 있다.

특히 2~3년 사이 물가 인상 폭이 급등했는데, 급등 폭이 너무 커 사회적으로 원가 상승 외 업체들의 과도한 폭리가 있었는지 의심됐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실제 분석 결과, 국세청은 원가 상승에 편승하여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리거나, 원재료 거짓 매입, 사주 일가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각종 세금 탈루 혐의를 포

착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가공인건비 지급,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 부부라서 깎인다? 월 24만원의 현실... 빈곤 완 화 취지 무색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부부 수급자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으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원 안팎에 그쳤다.

기초연금 동시 수급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늘었고, 이 중 소득 하위 40%가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000원에서 2024년 24만 7000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인상돼, 실제 수급액은 여전히 기준에 못 미쳤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되어, 의료비·돌봄비 등의 지출이 따로 필요한 부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부부 감액 완화'는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으며, 제도 개선은 앞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기초연금의 목적은 노후 소득보장과 빈곤 완화에 있으나 부부 감액 제도는 저소득 노인에게 오히려 이중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모든 노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업경영과 세무

- 국세청, 2025. 10

## 1 절세와 탈세

### ● 절세와 탈세의 구분

- 절세(tax saving)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경비처리 등)을 빠짐없이 적용하고, 조세지원 제도(세액공제·감면, 준비금, 충당금)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를 위한 특별한 비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납부를 줄이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절세를 위해 해당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의 조세지원 규정 및 국세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세정지원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탈세(tax evasion)란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 수입금액 누락, 비용 부풀리기, 타인 명의로 위장하기 등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장부를 작성할 경우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만 과세관청은 신고내용 확인, 과세정보 인프라 구축, 전산분석기법 확충 등으로 조세부과제척 기간 이내에 대부분 인지하게 됩니다.

설령, 잘못된 관행으로 실제 탈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탈루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년간 잘못 처리된 부분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의 일시 부과로 기업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신고와 절세를 위한 CEO의 노력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미래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2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기업주의 종합소득세 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가산세 포함)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 가져간 사람(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고서와 부속서류 내용은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되어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산화된 신고자료가 성실하다고 신뢰하고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 성실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성실도가 낮은 신고법인으로 분류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3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 ●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현금 지출이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계정항목입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의미합니다.

### ●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세금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시가(가중평균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자와 회사계상 수입이자의 차액을 계산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 경우 시가에 따라 산정한 이자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고 하며, 해당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 표시방법

구분	내용
주·임·종	단기채권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대여한 자금
단기대여금	타인에게 대여한 자금(예, 관계회사)
가지급금	연중에는 가지급금으로 표시, 연말에 주·임·종 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시

■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시점 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4 기업주의 사적경비 부담액과 세금

● 사적경비의 회계처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기업주의 사적경비를 비용처리 하면 법인세 외에 소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변칙 처리할 경우 법인이 기업주에게 금전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 관련된 법인의 비용을 부인하여 법인세가 과세(부정행위 40%, 역외거래 60% 가산세 포함)되며,

기업주는 상여금 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여 줄어든 세금보다 기업주 개인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 법인 보유·임차 주택을 사적 사용

법인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유지·관리비 등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출자임원 및 그 친족

■ 유지·관리비 및 적정임대료 여부

구 분	유지·관리비 손금산입 여부	적정임대료 계상 여부
주택을 출자임원 또는 그 친족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업무무관경비로 손금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을 비출자 임원·소액주주 임원 및 직원에게 제공한 경우	유지·관리비는 손금산입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하지 않음

## 5 지출증빙의 수취 및 보관

### ●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증명서류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건당 3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한 거래에 대하여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없이 현금으로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매입금액의 10%)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명서류가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과세관청에서는 손쉽게 인지하게 되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세방법입니다.



■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

서면-2019-법인-1237, 2019.9.18.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로서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 6 세법상 주요 조세지원 제도

### 1) 납부기한 등의 연장

재난 등의 사유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통하여 세금 납부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등의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⑦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파,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 ⑧ 위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신고기한 연장 및 납부기한 등의 연장은 9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

\*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선포된 날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에 사업장을 가진 자는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가능(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한정)

## 2) 잘못 낸 세금과 권리구제

### ●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수정신고 시기	감면 비율
1개월 이내	90%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납세고지서를 받기 전에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청구세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 사업장소재지 선택과 세금

사업장소재지 선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비교]

구분	내용	수도권		수도권 이외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		
창업중소 기업 감면 (조특법§6)	5년간 50~100% 세액감면 (연간 5억원 한도)	50%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만)	50% ~ 100%* * 청년창업,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통합투자세액공제(조특법§24)		대체투자는 공제 허용, 증설투자는 공제 배제 (하단 참고)	공제 허용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조특법§7)	매년 5~30% 세액감면 (최대 1억원 한도)	소기업	의료, 도·소매업 10%		의료, 도·소매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20%		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30%
		중기업	출판업 10%		의료, 도·소매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제조업 등 기타 감면업종 1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 및 경기도 일부(「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별표 1)

\* 수도권 기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이외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 2025.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창업중소기업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적용(조특법 §6 ⑬)

※ 2026.1.1.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지역에 대한 감면을 인하[(중전) 일반 50%, 청년·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100%, (개정) 일반 25%, 청년·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75%]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수도권 내 출판업을 영위하는 중기업 감면 가능

※ 일정요건의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나주(일반·혁신)·김제지평선·장흥 바이오 식품·북평(국가·일반)·강진·정읍 첨단과학·동함평·세풍일반(1단계), 담양 일반,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보령주포제2농공단지 입주하는 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64).

※ 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하여 감면요건을 갖춘 기업은 법인세를 3년간 전액, 그 후 2년간 50% 감면(투자누계액 및 상시근로자수를 감안 일정한도 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2의2,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 ※ 해외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로 이전하여 2027.12.31.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또는 해외사업장을 폐쇄하지 않더라도 해외진출 중소기업이 국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7년(3년)간 100%, 그 후 3년(2년)간 50% 감면 혜택을 부여함(조특법§104의24)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증설투자하는 경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음(조특법 §130)
  - 19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 개시한 일반기업은 대체투자도 공제 배제(단, 정보통신장비 등만 가능)(조특법 §130 2항)

구분	1989.12.31. 이전 사업개시	1990.1.1. 이후 사업개시
일반기업		× (정보통신장비 등 ○)
중소기업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산업단지, 공업지역, 정보통신장비 등 ○)

#### 4) 중소기업의 주요 세제지원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지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100%, 상시근로자 증가시 추가 감면)(조특법§6)</li> <li>-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최대 1억원 한도)(조특법§7)</li> <li>-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li> <li>-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세액공제(1,300만원/전환자 1인)(조특법§29의8)</li> <li>- 상생결재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15~0.5%, 10% 한도)(조특법§7의4)</li> <li>-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임금감소액의 10%+ 보전액의 15%)(조특법§30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li> </ul> </li> <li>- 성과공유제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경영성과급의 10%)(조특법§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12.31. 이전에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경우는 15%</li> </ul> </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조특법§132)</li> </ul>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li> <li>-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법\$25)</li> <li>- 대손금 특례(법령\$19)</li> <li>-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조특법\$31)</li> <li>-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법법\$72)</li> <li>-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소득법\$128)</li> <li>- 법인세 분납기간 연장(법법\$64)</li> </ul>
------	---

### 5)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단 계	주요 내용
신규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29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기업 제외)에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인원 1인당 4백만원~1천2백만원(최대 3년)</li> </ul> </li> </ul> </li> <li>▪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최대 2년)(조특법\$30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가인원 <math>\pi</math> 사회보험료 <math>\times</math> 50~100%</li> <li>*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시 100%, 신성장서비스업 영위 기업 75%, 그 외 50%</li> </ul> </li> <li>▪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경력단절여성·60세 이상·장애인 근로소득세 감면(조특법\$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간 70% (청년 5년간 90%)</li> </ul> </li> <li>▪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29의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증대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400만원~1,550만원(최대 3년)</li> <li>-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전환인원 1인당 900만원~1,300만원</li> <li>- 육아휴직 복귀자의 세액공제 복귀자 1인당 900만원~1,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및 '24년 과세연도분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가능(중복불가)</li> </ul> </li> </ul> </li> </ul>
재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li> <li>- 2년간 인건비 30%(중견 15%)</li> </ul> </li> <li>▪ 육아휴직복귀자 복직시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조특법\$29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li> </ul> </li> </ul>

	속하는 달까지 - 1년간 인건비 30%(중견 15%)
고용유지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 세액공제(조특법§30의3) - 연간 임금감소 총액×10% + 시간당 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보전액×15%
임금증대	▪ 근로소득 증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29의4) -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의 20%(중견 10%) 세액공제

### 6) 시설투자 세제지원

기업의 설비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활성화를 촉진하므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내용]

구분	내 용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합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및 기타(사업용 외) 유형·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                      &gt; (공제) 기본공제 + 추가공제[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10%, 기본공제의 2배 한도]</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 분</th> <th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cccccc;">기본(%)</th> <th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cccccc;">추가(%)</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대</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중견</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중소</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 반</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5(7)</td> <td style="text-align: center;">10(12)</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신성장·원천기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 style="text-align: center;">6(8)</td> <td style="text-align: center;">12(1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국가전략기술사업화*</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반도체 기술**</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body> </table>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반도체 기술**	20	20	30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7)	10(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국가전략기술사업화*	15	15	25																										
반도체 기술**	20	20	30																										
※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5.1.1.이후 최초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세율이며, '3년 투자분에 대해서는 '23년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적용 **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기술에 대해서는 5%p 상향('5.1.1.이후 투자분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전략기술관련과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 국가전략 : 7개분야 7개 기술 지정(조특령 별표7의2)                      신성장·원천기술 : 14개분야 270개 기술(조특령 별표7)</li> <li>• 국가전략기술(또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병행생산)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투자완료일이 '22.4.1. 이전인 경우에는 '22.4.1.)부터 다음 3개 과세</li> </ul>																													



	연도 종료일까지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 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예) 국가전략기술 시설이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신성장)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기타조세 지원	-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조특법 §29) - 에너지 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 §28의4) * 에너지 절약시설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 7) R&D 세제지원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인력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조세 감면 내용]

구분	내용
세액공제 (조특법 §10)	-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3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2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25%)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중소) 당기발생액 40% +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그 밖의 경우) 당기발생액 30%(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35%) + (당기 발생액/당기수입금액×3, 10%한도)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당기분방식 · (중소) 당기발생액× 25% · (중소 유예기간 종료 후) 당기발생액 × (1~3년 20%, 4~5년 15%) · (중견) 당기발생액 × 8% · (일반) 당기발생액/당기수입금액×50%, 2%한도 * 증가분방식 : (당기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중소 50%, 중견 40%, 일반 25%)
기타조세지원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등(조특법 §10의2)

## 8) M&A 세제지원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여러 가지 조세 지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업합병·분할에 따른 조세지원 내용]

구분	내용
----	----

<p>합병·분할시 조세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가능</li> <li>• 승계한 감가상각자산 수정내용연수 적용 가능 등</li> </ul> </li> <li>- 피합병(분할)법인 및 그 주주에 대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손익 과세이연 가능</li> <li>•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 종전 장부가액 평가·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익 손금 산입 등</li> </ul> </li> </ul> <p>*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되며, 청산소득 과세 없음</p>
<p>기타 구조조정 조세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1)</li> <li>•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32)</li> <li>•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8의2)</li> <li>•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44)</li> </ul>

### 9)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96의3)

#### ● 제도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발적으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입니다.

#### ● 세액공제 요건

임대료 인하 외에도 법령에서 정한 임대인 및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 요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제1항의 상가건물을 임대한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 임차인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 ② 2021.6.30. 이전부터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일 것
  - ③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일 것
  - ④ 사행행위업 등 조특령 [별표 14]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것

#### ● 공제금액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법인사업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 그 외 사업자는 50%

● **공제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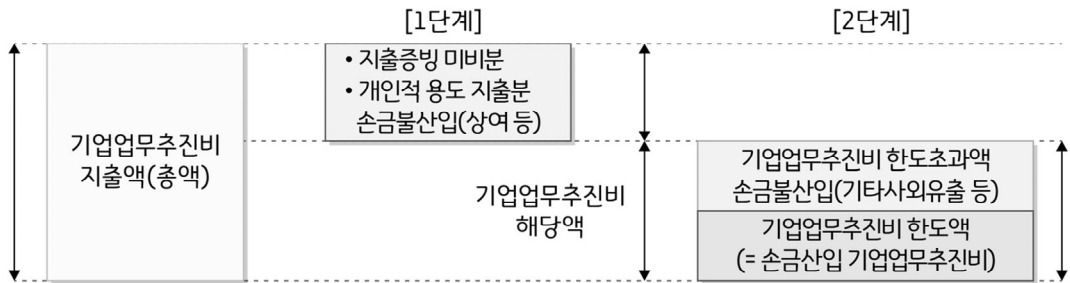
- 해당 과세연도 중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예: '24년 인하분 → '25.6.3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료·보증금보다 인상(갱신 시에는 5% 초과)하는 경우

**7 기업업무추진비(舊 접대비) 손금불산입 제도**

● **제도개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구조]



●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귀속시기와 평가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평가\*

\* 원가 500, 판매가 600원의 상품제공 시 기업업무추진비는 600원 + 60원 = 660원으로 평가

참고 1 -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구분	내용	업무관련	지출상대방	손금인정여부
기업업무추진비	접대행위에 의해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업무관련	특정인	한도내 손금
광고선전비	불특정다수의 구매의욕 고취		불특정다수	전액 손금
판매부대비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지출		특정인	전액 손금
기부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재산의 증여	업무무관	특정인	한도내 손금

참고 2 -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액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은 기본금액과 수입금액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②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③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가 있는 경우 ①의 한도액에 ②, ③의 한도액을 가산하여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위 한도액의 50% 적용하고 정부출자기관은 70% 적용)

① 일반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 기본금액 + ㉡ 수입금액기준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frac{\text{해당 사업연도 개월 수}}{12}$

㉡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적용률 × 10%)

일반수입금액 적용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적용률
범위	적용률	
100억원 이하	0.3%	일반수입금액 적용률의 1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100억원 초과액 ×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500억원 초과액 × 0.03%	

- ②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과 ㉡중 적은 금액
  - ㉠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 ③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과 ㉡중 적은 금액
  -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 ㉡ 일반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

## 8 대손금의 세무처리

### ● 제도개요

기업은 제품을 판매하는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상매출금, 미수금, 대여금 등의 채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들 중 거래처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으로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자산성을 상실하여 장부에서 제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대손금이라 합니다.

대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에 해당하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이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여야 합니다.

### ● 대손금의 범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영업거래뿐만 아니라 영업외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①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②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중 이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④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 ⑤특수관계인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대손사유**

법인세법은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등 대손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대손사유별로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대손금의 귀속시기**

대손금은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으로 인정하는 것(결산조정사항)과 법인이 장부에 손비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신고조정사항)으로 구분됩니다.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장부상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이후 사업연도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 대손사유별 대손금의 귀속시기**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②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함 ③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④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및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인 채권 ⑥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일정한 사유(법칙 §10의4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등	⑦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

<p>■ 대손금의 손금산입</p> <p>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p>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	------------------------------

## 9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

### ● 제도개요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용으로 취득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개별소비세법§1②(3)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관련비용을 손금산입 합니다.

<요건·기준>

- 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
-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 인정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함)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합니다.

###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금액[1천5백만원(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인정합니

다.

- 운행기록부 작성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운행기록부 미작성 : 1천5백만원(500만원\*)까지 인정
-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

### 참고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제도 개요

구분	법인	개인 사업자
대상 사업자	모든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
제도내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차량	대상 사업자가 소유·임차한 자동차로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자동차(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부인</li> <li>•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을 안분하여 일할 계산한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li> <li>※ 개인사업자는 전문직 종사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만 가입의무 有</li> </ul>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용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업무용승용차가 해당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 전액 손금부인</li> </ul>	
운행일지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이하인 경우</li> <li>*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li> <li>⇒ 운행일지 작성 없이 전액 비용 인정</li> <li>• 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500(500)만원 초과인 경우</li> <li>⇒ 1,500(500)만원 초과금액을 비용 공제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하며, 입증된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li> <li>* 업무사용비율: 승용차별 운행일지 상 업무용 주행거리 ÷ 총 주행거리</li> </ul>	
감가상각비·임차료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가상각비와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연간 800(4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 한도초과분은 이월</li> <li>*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li> </ul>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적용 의무화	
처분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800(400*)만원까지 손금산입하고 초과금액은 이월</li> <li>*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법령\$42②)</li> </ul>	
가산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부실제출 시 손금산입금액의 1%를 가	



산세로 부과('2년부터 적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여부

서면-2020-법인-5933, 2021.2.26.

법인이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로 자동차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지 않음

## 10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제도개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 미환류소득(차기환류적립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 2018.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신고

내국법인은 아래 과세방식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양수인 경우 “미환류소득”, 음수인 경우 음의 부호를 띤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함)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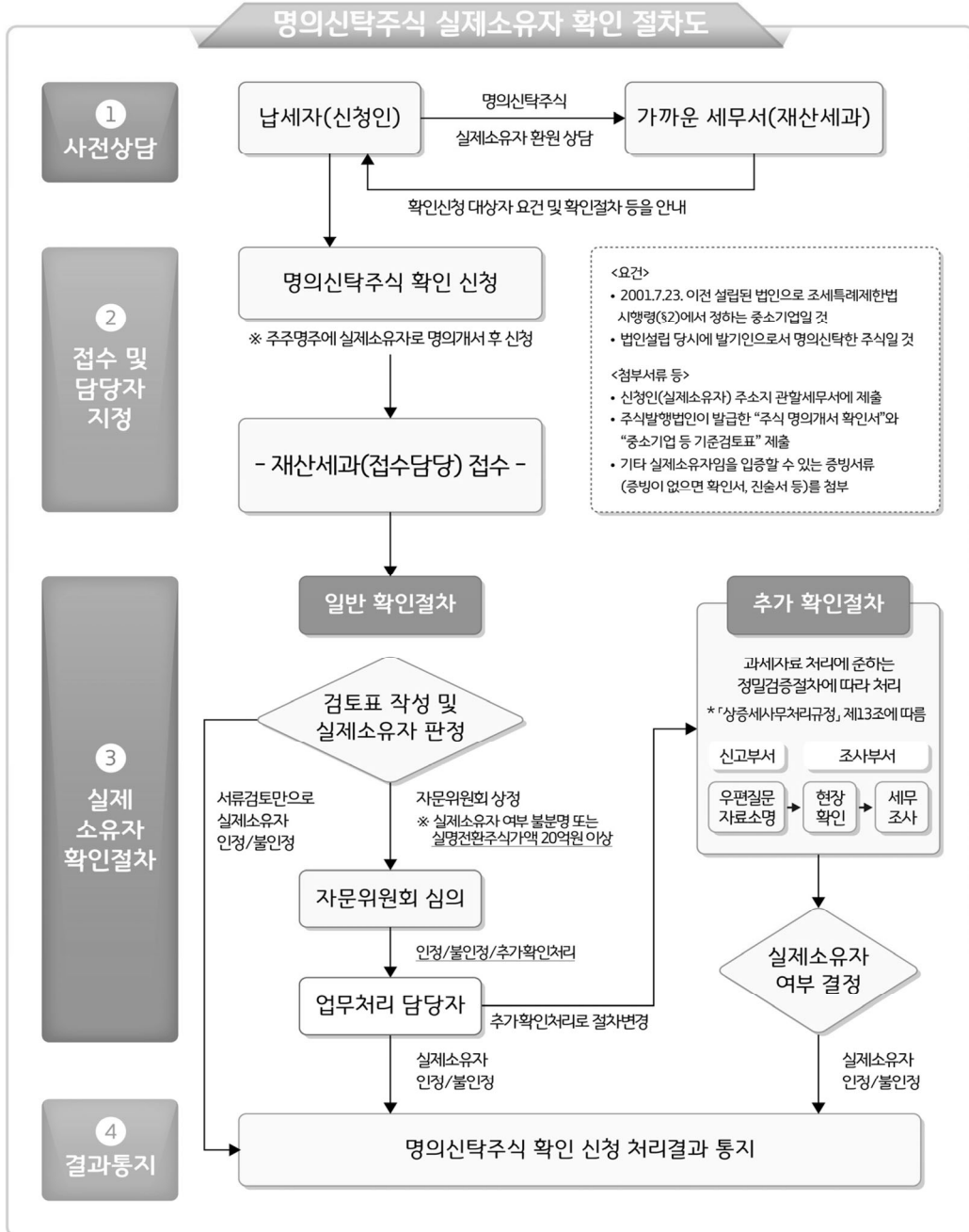
### ● 과세방식

투자포함 방식, 투자제외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하되, 투자포함방식은 3년간 계속 적용하고 투자제외방식은 1년 단위로 적용가능합니다.

- 투자포함방식 :  $[기업소득 \times 70\% - (\text{투자금액}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투자제외방식 :  $[기업소득 \times 15\% - (\text{임금증가금액} + \text{상생협력지출금액})] \times 20\%$

\* 단,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조특칙 §45의9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 가능

11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확인처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란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통일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대상자 요건

(중소기업)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되었고,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발기인)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당시 명의 신탁한 주식일 것

## 12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란

수혜법인이 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제공받아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 ● 증여자

증여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써,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매출\*1한 비율이 30%(중견40%·중소법인 50%)\*2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매출액 등은 매출액 산정시 제외

\*2 중견·중소법인이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그 금액이 1천억원 초과하는 경우 포함(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의3①나2)

### ●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한 비율이 3%(중견·중소법인은 10%)를 초과하는 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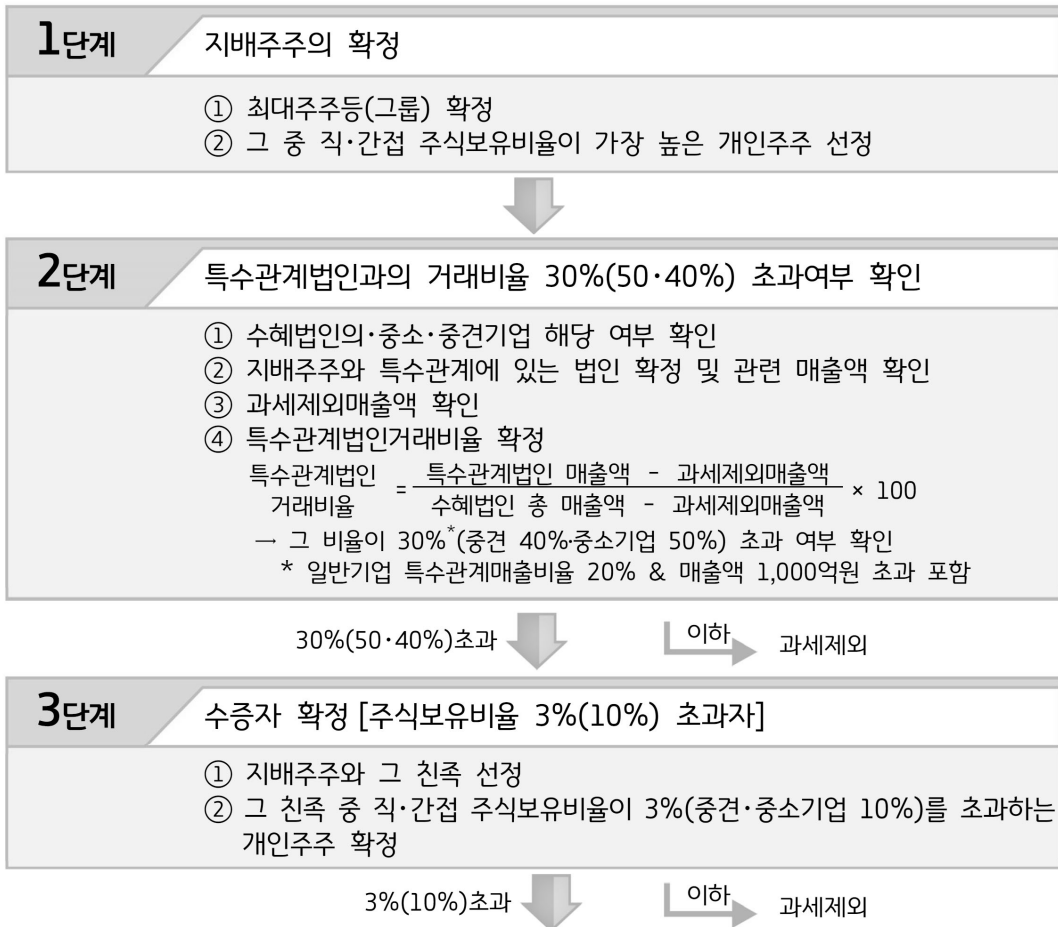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 - 0%(5%, 10%))

● 증여시기 및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증여시기 :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매년 과세)
-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24.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6.30.)

<과세요건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흐름도>





## 4단계

##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 세후영업이익
- ②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5%(중견 20%·중소기업 50%)  
\* ① 및 ② 산정 시 '추가되는 과세제외매출액' 감안하여 계산  
$$\text{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frac{\text{특수관계법인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text{수혜법인 총 매출액} - \text{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 포함)}} \times 100$$
- ③ 수증자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 0%(중견 5%·중소기업 10%)
- ④ 수혜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공제액
- ⑤ 증여의제이익 산정 : (① × ② × ③) - ④  
- 주식 직·간접보유분으로 구분하여 계산(㉠+㉡)  
㉠ 주식 직접보유분 관련 이익    ㉡ 주식 간접보유분 관련 이익

## 13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 ●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제도」 란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중소법인, 수혜법인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 제외)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24년 12월말 결산법인 주주의 경우 '25년 6월말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text{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times \text{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text{개시사업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세액중 상당액}] \div \text{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times 12\} \times 3$$

-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전체 세무 조정 후 영업이익×(해당 사업부문의 매출액÷전체매출액)으로 계산합니다.

○ (정산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수혜법인의 정산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 제도개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로 법인의 경우는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확인대상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소규모 법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 제2항에 따른 법인

- i) 부동산임대업 법인 또는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50% 이상인 법인
- ii)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 iii)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법인

③ ②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적용제외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조특법§104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

회사(PFV)

### ● 기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게는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 (60%, 150만원 한도) 등 혜택이 주어지며,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 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4-법인-1062, 2024.10.10.
주주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 15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의 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는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계좌입니다. 신고대상 자산은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3.6월 최초 신고)

### ● 신고내용

신고시에는 ①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②계좌번호, 금융회사명,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③계좌 관련자가 있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미·과소신고시 미·과소신고 금액의 10%(10억원 한도), 미·과소신고한 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관련 국외소득 신고**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국외금융소득, 국외자산 양도소득 등은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6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규모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다국적기업에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6, 같은 법 시행령\$33-35)

● **보고서 종류·내용**

- 개별기업보고서 : 개별기업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및 가격산출정보, 재무현황
- 통합기업보고서 : 그룹 전체에 대한 설명(조직구조, 사업내용 등), 무형자산 내역, 자금 조달 활동, 재무 및 세무 현황
- 국가별보고서 : 국가별 수익, 세전이익(손실), 납부세액, 자본금, 유보이익, 종업원 수, 관계회사 목록 및 주요 사업내용

● **외형 기준 제출대상자**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 해당 과세연도에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① 매출액 1천억 원 초과
  - ② 국외특수관계인과 재화·용역·무형자산·대차거래 규모 합계액 500억 원 초과
- 국가별보고서 :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법인
  - ① (최종모회사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



을 초과하는 국내의 최종모회사

- ② (최종모회사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 유로(상당액)을 초과하는 국내 관계회사\*

\* 다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 최종모회사 소재지국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 ㉡ 다른 국내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 ㉢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고 우리나라와 교환되는 경우

<주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영업외수익 및 특별수익 등 손익계산서상 수익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제출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 제출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 보고서 각 건별 3천만 원

#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으로 프리랜서의 건강보험료 조정이 편해집니다

- 국세청, 2025. 9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함

\* 【매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반기】 상용근로자(세제개편안에 따라 '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예정)

-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25. 9. 16. 시행))

-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보도참고자료 배포 '25. 1. 23.)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세,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

- 국세청, 2025. 10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화재로 기획재정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운영이 일시 중지되어 '25.9.27(토) 홈택스 등 국세청 소관 정보시스템으로 국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이후, 기획재정부가 디브레인을 신속히 복구하여 납세자가 홈택스 이외에도 은행앱·가상계좌 등을 통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에 따라, '25.9.28(일) 21시 30분경 모든 국세 납부 채널이 정상화되었음을 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지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관련 상황 종료 시까지 위기대응반을 구성·운영하여 정부시스템 복구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불편사항 발견 시 즉각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홈택스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업을 통해 국민 편의 증진

- 국세청, 2025. 10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증빙서류인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프리랜서가 특정 업무나 사업장에서 공식적으로 해임되었음을 증명

'실시간 소득자료'는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함

\* 【매월】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강사 등)

【반기】 상용근로자(세제개편안에 따라 '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 예정)

□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입증하는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여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공단에 보험료 조정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25. 9. 16. 시행))

□ 그간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가 다양한 복지정책에 활용되도록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업무협약 체결('25.1.16.)을 통해 사업자

가 연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자료 연계로 201만 사업자의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 (보도  
참고자료 배포 '25. 1. 23.)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이 뽑은 K-SUUL, 세계인과 함께 즐긴다

- 국세청, 2025. 9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세계적인 명품주로 성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주관하는 「2025 K-SUUL AWARD」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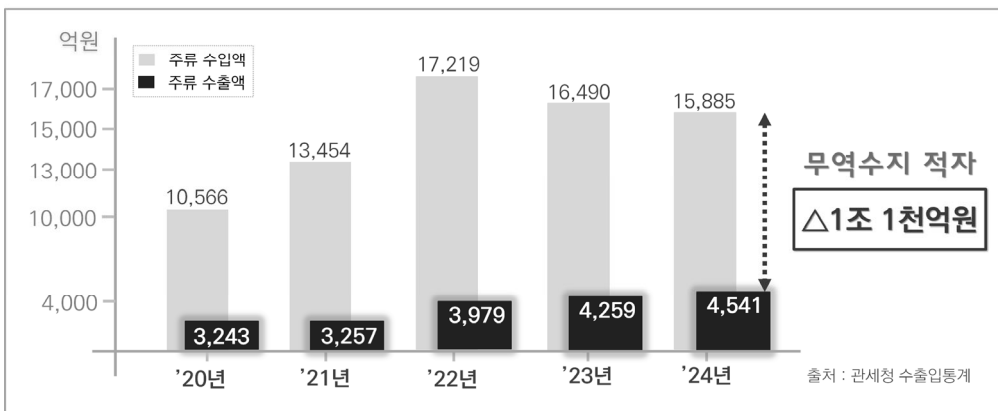
□ 국내 주류산업은 인구 감소와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반면에, 해외에서는 K-팝·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열풍으로 K-소주에 대한 해외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내 주류 출고량 : ('15년) 381만kℓ ➡ ('24년) 315만kℓ, 17.2%▼

\*\* 소주 수출량 : ('20년) 62,188톤 ➡ ('24년) 70,054톤, 12.6%▲ [관세청 수출입자료]

○ 이에 힘입어 이번 행사를 통해 특색있는 맛과 향, 독창성 및 성장 가능성을 지닌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함께 알려, K-SUUL의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최근 5년간 주류 무역수지 현황 |



□ 그동안 우수 주류를 개발하고도 인력 부족, 인프라의 한계 등으로 해외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수출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주류를 한자리에 모아,

- 해외시장에 앞서서 진출해 있는 주류 대기업, 대형유통사 등의 수출 경험\*과 해외 주류 트렌드 등을 토대로 ‘국민이 세계인과 함께 즐기고 싶은 K-SUUL’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OB맥주, 하이트진로와 롯데마트, 비지에프리테일, 우리술컴퍼니, 이마트가 참여하여 해외소비자의 기호와 소비성향 등을 반영·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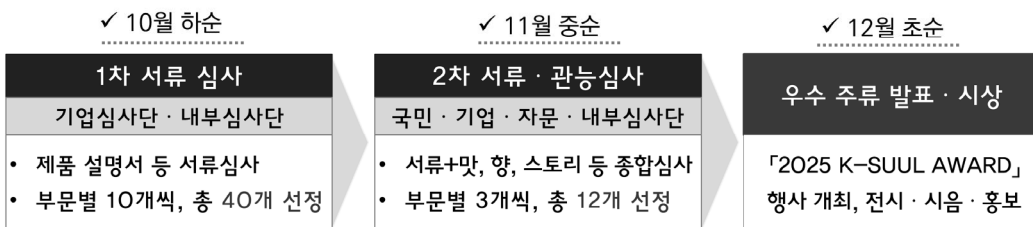
- 수출지원 우수 주류를 선정하기 위한 「2025 K-SUUL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5 K-SUUL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수출 경험이 많은 대기업과 해외매장이 있는 대형유통사 등의 기업 심사단 및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됩니다.
- 특히, 국민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알리고 국민이 해외에 소개하고 싶은 K-SUUL을 직접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공개 모집하고, 별도 추천 등을 통해 총 40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2025 K-SUUL AWARD」 국민심사단 모집 공고

- 모집 대상 K-SUUL에 관심이 많고 해외에 알리고 싶은 소비자 40인(주류 업계 종사자 제외)
- 신청 기간 25.9.15.(월)~25.9.25.(목) 오후 6시 마감, 11일간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https://naver.me/GT6SKuhi>)
- 선정 발표 25.10.1.(수) 예정, 국세청 누리집 게시 + 개별 통지(심사일정 별도 안내)
- 참고 사항 25.11월 중순 위촉장 수여 / 심사료 10만원 지급

- 「2025 K-SUUL 심사위원회」에서는 제품설명서 등으로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를 함께 진행하는 2차 종합심사를 통해 탁주·약주·청주류, 과일주·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 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총 4개 부문별 최종 우수 주류를 선정합니다.

| 「2025 K-SUUL AWARD」 우수 주류 선정 심사 절차 |





- 12월 개최하는 「2025 K-SUUL AWARD」 행사에서 심사 결과 최종 선정된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발표와 함께 시상하고, 수상한 모든 주류의 전시·시음을 통해 각 주류의 고유한 맛과 향, 우수성 및 성장 가능성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 「2025 K-SUUL AWARD」에서 선정된 우수 주류는 국세청 인증 마크 부착으로 신뢰도와 홍보 효과를 높이고, 대형유통사와의 협업을 통한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게 됩니다.
- 또한,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 주류박람회(B2B)에 참가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아 「대한민국 K-SUUL관\*」에 전시·시음을 통해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 \* 국제 주류박람회에 국세청 주관 부스를 설치하여 K-SUUL 해외 인지도 제고
- 국세청은 「2025 K-SUUL AWARD」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대·중소기업의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 주류 업계, 관계 부처와의 소통을 확대하여 K-SUUL의 세계화를 위한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